

⑩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[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/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/보험급여팀장 백영기[6581]/팀원 박수연[6548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0473호

시행일자 2018. 01. 03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
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0호(2018.01.02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65호(2017.12.29.)
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63호, 2017.12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1. 주요내용

-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 (명칭 및 코드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등)
- 유전자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따른 항목 신설
- 난임치료 시술 한시적 급여횟수 확대 관련 사항 규정

2. 시행일 : 2018.01.01.

붙임 : 1.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 1부.

2. 별지2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